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73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9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9. 7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여성가족과장)
- 제출일자: 2020. 8. 24.
- 회부일자: 2020. 8. 24.
- 검토기간: 2020. 8. 25. ~ 2020. 9. 3.

2. 개정이유

- 국민(구민)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감면 혜택 부여를 통해 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, 장기 기증 장려 조례 및 최근 개정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,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10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) 제2항에 의사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가족, 장기기증 등록자(기증자)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함.

4. 관계 법령: 【별첨】

5. 검토의견

- 현재 달서구는 개별 조례¹⁾에 따라 <자원봉사자>, <장기 기증자>, <병역명문가증 소지자> 및 <아이 조아 카드 소지자>들에게 구 공공 시설을 사용할 경우 부담할 사용료 중, 일부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한편, 구청장은 상위 법률²⁾에 따라 <기초생활수급자>, <등록장애인>, <국가보훈대상자> 및 <의사상자>등에게도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어야 함.
- 그러나 현행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는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로 <자원봉사자> 및 <기초생활수급자>, <등록장애인>, <국가보훈대상자>는 규정(제10조제2항)하고 있으나, <장기 기증자>, <병역명문가증 소지자>, <아이 조아 카드 소지자> 및 <의사상자>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음.
- 동 개정안은 이처럼 상위 법률 및 달서구 개별 조례 제정 취지와 달리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서 누락된 상기 대상자들을 감면 대상자로 추가로 규정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.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현행 달서구 개별 조례 및 상위 법류 취지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인 바,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
- 1) ①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- ②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」 5조
 - ③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 - 2)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
 - 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 - 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

【별첨】

【관 계 법령】

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5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의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9조(예우)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
2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수강료, 주차료 일부 감면
3.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4.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

제5조(우대)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·운영(위탁운영을 포함 한다)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,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, 입장료,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·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지원내용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2. 달서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3.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·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제2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